

화보법 시행령 개정(안)

오는 8월부터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건물에 대한 기준이 현행 4층이상 건물에서 6층이상, 연면적 1천㎡ 이상의 건물로 바뀐다.

또 화재보험 의무가입제의 적용대상지역이 현행 서울등 7대 도시에서 수원, 성남, 부천, 마산, 울산 등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로 확대된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 대비표〉

구분	현행	개정	비고
적용 대상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전주	특별시, 직할시, 전주, 수원, 부천, 성남, 마산, 울산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 추가 (수원, 성남, 부천, 마산, 울산)
특수건물의 범위	○ 국유건물, 종합병원, 병원, 공연장, 촬영장 및 방송시설장, 육내판매장	동일	
	○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설강습소로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330㎡ 이상인 건물	○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물	○ 관련 법규개정에 따라 근거조문 정리
	○ 숙박업법에서 규정한 호텔로 사용하는 건물	○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으로 사용하는 건물	○ ,
	○ 시장법에서 규정한 시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 도·소매업 진흥법 제2조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 대규모 소매점 및 도매센터로 사용하는 건물	○ ,
	○ 유흥음식점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7항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집계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물	○ ,
	○ 학교	○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건물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건물	○ ,
	○ 가구수 10 이상의 것으로서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공동주택 건물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 연립 및 다세대주택을 제외한 아파트(5층 이상의 주택)만으로 범위 조정
	○ 연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공장건물과 공업단지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중 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에 소속된 모든 공장 및 부속건물	○ 연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공장건물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중 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에 소속된 모든 공장 및 부속건물	○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
	신 설	○ 6층이상의 건물로서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물. 다만, 창고 및 주차전용 건물 제외	○ 4층 이상의 건물을 화재발생률이 현저히 높은 6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로 조정.
신채 손해 배상 책임보험금액	사망 : 500 만원 부상 : 최고 400 만원	사망 : 1,000 만원 부상 : 최고 800 만원 후유장애 : 최고 1,000 만원	○ 보상금 지급수준의 현실화와 후유장애시에도 보상범위 확대
경과 조치	강제보험 시행에 따른 홍보등을 위하여 화재보험 의무가입 적용대상 지역으로 새로 추가되는 특수건물 소유자의 보험가입 및 협회의 안전점검 의무를 새로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간 유예함		